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 2. 24.(수), 14:00 ~ 17:00
-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207호
- ▣ 참 석 자 : 김학범, 류제현, 전영우, 안계복
우경식, 이두표, 이상석, 황재하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주택단지 및 진입로 조성	공개
2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3	「광릉 크낙새 서식지」 주변 벌채 및 조림	공개
4	「장수하늘소」 사유 신축	공개
5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6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공개
7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주변 창고 신축	공개
8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캠핑장 조성	공개
9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창고시설 신축	공개
10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내 어류 포획·반출	공개
11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검토사항】		
12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지」 모니터링 결과 관련 검토	공개
【보고사항】		
13	천연기념물 식물 희귀식물 실태조사 및 연구계획 보고	공개
14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23건)	공개

【심의사항】

안전번호 천기 2016-02-01

1. 「강화 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주택단지 및 진입로 조성

가. 제안사항

「강화 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주택단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주택단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해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2016년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1.27.) 결과 '사업 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에 의해 부결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자료를 보완(지정구역에서 10m 이격)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4인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 지정일 : 2000.7.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주택단지 및 진입로 조성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산**-*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주택단지(19동) 신축 및 진입로 조성
 - 대지면적 18,196㎡, 건물 19동 신축
 - (A타입/3구역) 단독주택 7동, 1,356.04㎡, 2층(최고높이 8m)
 - (B타입/3구역) 단독주택 5동, 759.6㎡, 2층(최고높이 7.9m)
 - (C타입/2·3구역) 단독주택 7동, 1,246.77㎡, 2층(최고높이 8m)

- 도로 2,120㎡(단지 내 1,787㎡, 진입로 333㎡), 부지 내 성·절토 및 옹벽(5m 등)
- 지하수 : 19개소 30m 굴착, 관지름 50mm, 상부 보호공 설치
- ※ 당초와 변경사항 : 지정구역(양어장 방면)에서 10m 이격(원형보존)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 5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인접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2구역(평지붕 5m이하), 3구역(평지붕 8m이하)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2.18.)**

- 본 건물은 지난번 절성토, 옹벽설치, 수목제거 등에 따른 과도한 지형 및 경관 변화로 인해 저어새의 서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사항임
- 금번에는 당초보다 1구역 10m 넓이를 원형보존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재신청 되었으나, 사업에 따른 과도한 지형 및 경관변화에는 큰 변화가 없어 저어새의 서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2.19.)**

- 양어장 방면 1구역을 10m 이격할지라도 신축으로 인한 옹벽의 발생은 불가피 하며, 단독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기존 산림의 훼손도 우려됨

(* ·*** 문화재위원,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20.)**

- 동 신청 건물은 갯벌 해안에 인접한 임야에 단독주택 2층 19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조성을 위한 과도한 절·성토 및 옹벽설치 등 지형변화가 크고 기존 식생이 크게 훼손되어 해안 경관의 훼손은 물론, 저어새 번식 및 서식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2. 「강화 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강화 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 지정일 : 2000.7.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1동)
 - 건축면적 143.07㎡, 지상1층(최고높이 4.9m), 경사지붕, 목구조
 - 전면 콘크리트 옹벽 2단(7m), 후면 콘크리트 옹벽 2단(6m), 성·절토 등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평지붕 5m이하), 3구역(평지붕 8m이하)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에 옹벽설치 및 절·성토를 통해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2.15.)

- 강화갯벌 주변의 임야(보전관리구역)의 도로변에 목조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절·성토가 0.1~7m 가량 발생하여 신청된 건임
- 사업지역 주변의 물웅덩이와 갯벌은 저어새를 비롯하여 노랑부리백로 등 희귀한 천연기념물 철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콘크리트옹벽 조성에 따른 지형경관의 변화는 철새들의 도래 및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2.19.)

- 주택은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곳에 위치하며, 더구나 7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므로 자연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3. 「광릉 크낙새 서식지」 주변 수목벌채 및 조림

가. 제안사항

「광릉 크낙새 서식지」 주변 수목 벌채 및 조림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릉 크낙새 서식지」 주변 수목 벌채 및 조림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2015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5.7.22.) 결과 '수목벌채 시 천연기념물 서식지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에 의해 부결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자료를 보완(전체 모두베기 → 모두베기·숙아베기)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3명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1호 「광릉 크낙새 서식지」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번지 일원
 - 지정일 : 1962.12.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수목 벌채 및 조림
 -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산***번지
 - 사업내용 : 수목 벌채 및 조림
 - (벌채) 11.9ha, 모두베기 3.5ha, 숙아베기(20%이하) 8.4ha * '78년 벌채·조림지역
 - (조림) 10,500본, 포천시 조림 권장수종
- ※ 당초신청과의 사업내용 비교

구분	당초('15.7월)	금회 신청
수목벌채	모두베기 11.9ha	모두베기 3.5ha, 숙아베기(20%이하) 8.4ha
조림	35,700본	10,500본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3월 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0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류에 따름)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광릉 크낙새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수목 벌채·조림 사업으로, 대상지의 약30%는 모두베기, 나머지는 20%이하 숙아베기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광릉 크낙새 서식지의 식생 및 환경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2.15.)

- 본 신청건은 허용기준 1구역의 입목을 벌채하여 펄프목 및 제재목으로 활용함으로써 임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년 7월 문화재구역에 서식하는 까막딱다구리, 올빼미 등 다양한 천연기념물 조류의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되었던 사업임
- 지난번 신청내용이 비해 벌채 대상지역 11.9ha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20% 이하의 숙아베기를 채택함으로써 조류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저감될 것으로 생각되나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에 의한 관리계획을 함께 검토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바. 의결사항 : 가결

4. 장수하늘소 사육 신청

가. 제안사항

「장수하늘소」의 복원 및 증식을 위해 장수하늘소 사육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장수하늘소」의 정확한 영기와 장연 상태의 유충기를 파악하여 복원 및 증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장수하늘소 사육을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 소재지 : 전국일원
 - 지정일 : 1968. 11. 22.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장수하늘소(수입개체 및 증식개체) 사육
 - 사업위치 : 강원도 영월군 동강로 ***
 - 사업내용 : 천연기념물 수입개체 및 증식개체 사육
 - 신청목적 :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정확한 영기 파악과 자연상태에서의 유충기를 파악하여 향후 방사 및 모니터링에 활용하기 위함
 - 사육신청 개체 : 성충 4개체, 성충에서 증식된 유충 53개체
 - 도입 경로 : 중국 수입(제출된 송장에 평안북도 천마산에서 2015.7.28~8.4.내 채집된 개체로 표기)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항은 수입 장수하늘소 증식개체(유충)의 복원·증식 연구에 활용하고자 사육 신청한 건으로, 장수하늘소 중 복원·증식 및 증식개체의 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서면검토 의견 / 2016. 2. 12)

- 장수하늘소는 장수하늘소속에 속하는 다른종과 다르게 동아시아에만 분포하는 종으로,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장수하늘소는 분자생물학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남한의 장수하늘소와 같은 종임을 증명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장수하늘소 동종이라고 할 수 있겠음.
- 다만, 국외(북한, 중국, 러시아)에 서식하고 있는 장수하늘소의 서식실태와 생태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개체들의 많은 생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비록 북한에서 채집된 개체라고 하더라도 천연기념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구목적(사육기술 개발 등)로만 누대 사육하는 공시충으로 이용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임.

(*** 서면검토 의견 / 2016. 2. 12)

- 도입 장수하늘소 개체에 대해서는 제출한 이송업체의 송장(invoice)만으로 개체의 채집자와 채집기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실시한 사육집단에 대한 DNA 분석 결과는 제공 시료에 대한 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종 수준의 mtDNA COI 분석방법을 통한 결과만으로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와 북한 또는 중국 도입개체를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제적으로 분포하는 장수하늘소에 대한 계통분류학적인 연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의 구분은 어려움이 있으며, 도입개체는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고, 신청인이 향후 복원의 적용을 위해 사육목표와 필요성에서 제시한 『실험실에서의 정확한 영기 파악과 자연상태에서의 유충기 파악』 및 『인공증식 사육기술 개발』에 한해 생태적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통제된 공간 내에서 실험적인 목적으로 기술개발에 목표를 두고 제한적으로 사육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보류

5.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지정일 : 1966.10.12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
 - 사업내용
 -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574㎡/ 96.93㎡/ 148.42㎡
 -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 1동, 2층(최고높이 8.6m)
 - 보강토 옹벽설치 : H=1.5~4.5m / 절토량 36㎡ / 성토량 566㎡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3구역(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 이하)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연결한 2구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1.5~4.5m 높이의 보강토 옹벽이 설치된 후 2층(8.6m)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문화재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2.15)

- 해당지역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신례천에서 10여m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현재 신례천변에는 과수재배를 위한 소규모 농업용 창고, 비닐하우스 정도 밖에 없는 실정으로, 해당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문화재와 이질적인 경관을 이룰 가능성이 높으며 문화재로의 조망 또한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6.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등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등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제27호 「제주무태장어서식지」, 제378호 「제주 천지연난대림」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서귀포시 중문동 ***번지 외 필지를 기존 1구역→ 2구역으로 조정)
 - 신청내역 :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중문관광단지 내 서귀포시 중문동 ***-*번지 외 필지에 대하여 현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 심의)으로 고시되어 있는 기준을 2구역으로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라. 검토의견(*****)

- 신청대상지는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및 천제연 난대림, 무태장어서식지 지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현재 1구역(개별심의)에서 2구역(평지붕 최고 11m이하)으로 완화 신청하는 건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관리단체 의견)

(1) 관리단체 의견

(**** 의견 / 2016. 2. 18)

- 지적경계선으로 1, 3구역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지정한 사항을 현지여건 및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등고선(절개지)에서 10m이상 후퇴하여 1구역을 2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조정함이 바람직함

(**** 문화재위원 자문의견 / 2015.11.25)

- 신청지역을 1구역에서 3구역으로 하는 기준 변경은 신중히 판단
- 제주무태장어 서식지와 주상절리대 지역의 경우, 문화재 주변의 환경변화가 있음에 따라 1구역에서 2구역으로 기준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천제연폭포 하류쪽 지역의 경우, 문화재 주변의 환경변화가 없음에 따라 신청 지역은 현행대로 1구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해당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6.2.15.)

- 신청구역 중에서 천제연폭포 하류쪽의 지역은 1구역에서 3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주변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1구역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됨.
- 해안 쪽의 부분은 부근에 주상절리대의 경관이 뚜렷하지 않고, 이미 해녀의 집으로 인해 경관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임. 하지만 해안가의 낮은 부분에 여러 시설이 설치될 경우, 전체적인 경관에 좋지 않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1구역으로 보전이 필요함.
- 단, 그보다 호텔 쪽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은 현재 1구역과 3구역의 경계가 지번의 경계로 되어 있어 합리적이 아님. 따라서 경계를 직선화할 필요가 있음. 이 지역의 1구역의 경우, 3구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이며, 해안가에서 보이는 지역이므로 2구역 정도의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무태장어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나, 이 생물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므로 전체적으로 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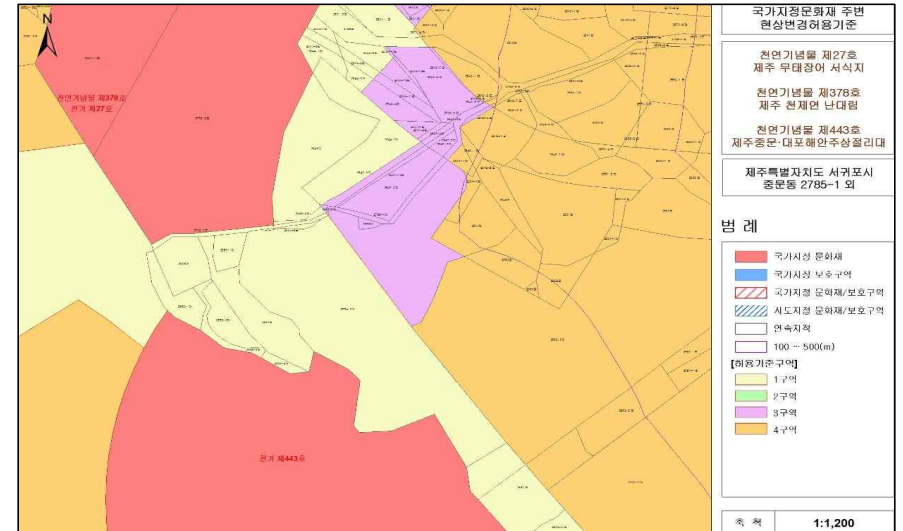
- 해당지역 주변은 해안도로가 개설되는 등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경관이 우수하고 천제연 난대림지대와 주상절리대를 연결하는 주요 지역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
- 특히, 해안 낭떠러지 상단부를 연결하는 등고선 밖의 10m 이내의 지역은 현상 변경이 불가하고, 낭떠러지 상부의 기 건축된 건물들도 가능하다면 철거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낭떠러지 상단부를 연결하는 등고선 밖 10m 외곽 지역은 중문천 반대편 쪽에서 조망해 보았을 때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2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 하다고 판단됨.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2016.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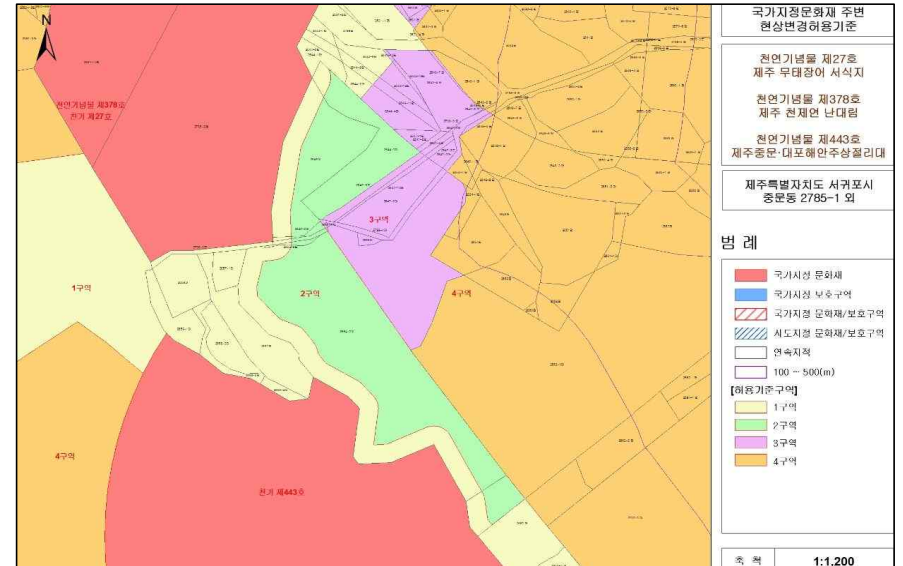
- 보호구역 허용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구역은 천연기념물 27호 제주무태장어 서식지의 집안구역임
 - 번식행동을 위하여 강과 바다를 오가는 무태장어에게 있어서 소하 대상 하천의 진출입 기수역은 생리,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임
 - 허용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구역은 어린 무태장어가 소상하거나 소하하기 위하여 머무는 장소임
 - 해당구역은 무태장어가 소하 또는 소상하는 과정에서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먹이생물(곤충류, 양서류 등)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수변생태계임
- 이에 보호구역 허용기준의 완화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바. 참고자료(대상지역 허용기준 지형도면)

○ 허용기준 고시도(현재)



○ 허용기준 조정(안)



사. 의결사항 : 보류

7.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주변 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주변 창고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주변 창고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63호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 지정일 : 1979. 6. 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농산물 창고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
 - 사업내용 : 창고 신축
 - 건축면적/ 연면적 : 99.18㎡ / 99.18㎡
 - 구조/ 최고높이 : 경량철골구조 / 4.7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 12. 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구역 : 개별심의(기존 규모 재.개축)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산굼부리 분화구와 인접한 구역에 농산물 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관리단체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 2. 18)

- 산굼부리 분화구 문화재(천연기념물)구역 경계에서 약 50m 정도 이격되어 있는 제1구역 내 부지(임야)에 약 30평(99.2㎡) 규모의 단층(최대고 약 5m) 농산물저장시설 신축을 계획
- 신축건물의 용도는 농산물(주로 콩)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부지 인근에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지는 않고, 타 지역(장소 불명)에서 생산된 것을 이곳으로 운반하여 보관할 예정이라 함.
- 부지 서쪽으로 산굼부리 주차장이, 북쪽으로는 비자림로(국도 1112번)가 접해 있고, 북쪽 도로 건너편에는 간이음식점 1개소(20평 규모)가 들어서 있음
- 신축부지의 바로 주변에는 북쪽면(도로쪽)을 제외하고는 평균 7m 높이의 삼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있어서, 건물이 신축될 경우 부지 외부에서는 거의 조망되지 않음
- 현재 산굼부리 분화구 주변 1구역 내에는 산굼부리 관리사무소 및 기타 관람 시설 제외하고는 건축물이 전무함.
- 산굼부리 분화구 정상 및 주변 관람로에서도 신축부지와 건물(예정)은 삼나무에 가려서 조망되지 않으며, 따라서 건물신축으로 인해 현재의 경관이 저해될 우려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현재 상태로 삼나무가 보존된다는 전제 하에서)
- 다만, 지형적으로 건축부지는 산굼부리 분화구사면의 연장지역으로서 북쪽으로 다소 경사져 있는데, 이로 인해 건물신축과정에서 기초 터파기를 포함하여 최대 1~1.5m 정도의 절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지형 훼손의 우려가 있음.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 2. 19)

- 신설하고자하는 구조물은 농산물 창고용 경량철골 건축물임.
- 신축 위치는 천연기념물 산굼부리의 보존을 위하여 원지형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임.
- 인접하여 이미 산굼부리 탐방객들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시설들에 접하고 있는 지역임.
- 그러나 신청지는 산굼부리 분화구 외륜의 끝부분으로 분화구를 구성하는 중요

8.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캠핑장 조성

가. 제안사항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캠핑장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캠핑장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6호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 소재지 :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1 등
 - 지정일 : 1979.12.1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불영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 등
 - 사업내용

구분	세부내역
토공	노면정리(골재부설 등) A=21,500㎡
구조물	호안블럭설치 L=400.0m, A=1,290㎡
숙영시설	텐트사이트 43동 (가로 5m × 세로 10m)
포장	마사토포장(흙) : A=2,128.0㎡, 주차시설 : 40면
조경	음수대설치(2,000×1,200×1,160) : 3개소 수목식재 : 청단풍 27주, 느티나무 47주 잔디식재 : A=10,261㎡
화장실	화장실설치(4,900×3,300×3,750) : 2개소 오수정화조 설치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1.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부분에 해당함. 또 도로에 연결하고 있어 비록 수목으로 시각차단 효과가 있다고 하나 경관성 저하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공구조물의 설치는 분화구의 형태를 훼손하게 되어 천연기념물의 가치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현상변경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하며 오히려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들도 가급적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 2. 19)

- 산굼부리는 피트형 화산체로서 국내에서 매우 뛰어난 자연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산지형임. 이 지역은 지질학적인 가치 외에도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고, 일반사람들이 화구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함.
- 해당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263호 산굼부리의 주변 제1구역에 농산물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지역의 주변에는 다른 시설물은 거의 없으며, 참나무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다른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주변의 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이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바. 의결사항 : 부결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존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2.16.)**

- 하천변 부지인 신청지에 캠핑장 조성을 할 경우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캠핑장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에 따라 불영사 계곡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할 수 있으며, 시설 설치 및 이용에 따른 하천오염 및 주변 자연환경의 오염 및 훼손이 우려됨. 오히려 현 부지를 자연적으로 회복하여 불영계곡의 아름다운 경관의 관광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안건번호 천기 2016-02-09

9.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창고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창고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창고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2015년 제1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5.11.25)에서 '건물 신축 예정지가 구원리사지, 태평암지 등 매장문화재 분포지와 인접하고 있으며, 신청한 규모의 건물이 신축된다면 문화재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창고 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 지정일 : 2009.12.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창고시설 신축공사
 -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
 - 사업내용 : 창고 신축

구분	건축면적	가로	세로	최고높이	구조
당초('15.11월)	136㎡	17m	8m	4.37m(지상1층)	일반철골구조
금회('16.1월)	72㎡	12m	6m	4.07m(지상1층)	일반철골구조
증감	△64㎡	△5m	△2m	△0.3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1.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문화재구역 내 창고를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인근에 구원리사지, 태평암지가 자리하고 있어 최근 사업예정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문화재 보존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10.28.)**

- 구원리 ***번지 농가창고 신축 건물 부지면적 699㎡에 건축률 19.46%에 해당하는 건축면적 136㎡의 농가창고를 신축하는 계획임
- 농지 면적에 비해 과도한 농가창고 신축 건물 추후 용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축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4.17.)**

- 신청 대상지는 사찰이 위치했던 폐사지로서, 기와조각 등이 다수 발견되는 장소임. 유적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행한 후 창고 신축 건물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4.17.)**

- 신청지는 <합천군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사지(寺址)'로 기초사된 사역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유자는 행위 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매입한 토지를 여러 단으로 나누어 절성토하고, 매단마다 큰 돌로 높게 석축하고 매실 등의 유실수를 심어 경작하고 있었음.
- 신청지 및 그 주변에 자기편과 와편 등이 산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신청지에 대한 문화재 분포 유무 및 훼손 정도, 가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선 조사를 시행 후 이 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 발굴조사 자문위원 의견)**

- 조사된 유적은 조선후기 백자생산가마로, 노출결과 가마 유구 중 소성실의 하단 부분만 확인되었으며 소성실 상부는 지형의 인위적 변경으로 망실됨.
 - 조사된 유구는 범위 내에서 노출시키다 보니 연소실 확인이 불가하며 잔존 상태가 좋지 않고 대부분 훼손되어 있는 바, 조사자료를 충실히 남긴 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함
- ※ 발굴조사
- 조사기간 : 2015.7.14~9.10
 - 조사면적 : 699㎡(유적분포지 전체가 아닌 건축예정부지 1필지만 실시)

바. 의결사항 : 부결

10.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내 어류 포획·반출

가. 제안사항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내 어류 포획·반출을 위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내(섬으로부터 200m 이내 해역)에서 선상낚시 방법으로 어류를 포획·반출하고자 신청하는 사항임.
- 신청인은 2010년 11월 어류 포획·반출을 신청하였으나, 2010년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0.12.29)에서 '해양환경오염 및 자연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배치될 것으로 판단됨'의 사유로 부결되었고, 금회 어류 종류 및 채취시기를 세분화하고 연간채취량을 변경하여 재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7호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 소재지 : 전남 여주시 삼산면 거문리 산30 등
 - 지정일 : 1979.12.1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동물(어류) 포획·반출 허가 신청
 - 사업위치 : 상백도·하백도 해안으로부터 200m 이내 해역
 - 사업내용
 - 포획·채취·반출 부분 및 수량 : 어류, 연간 46톤
 - 포획·채취·반출 방법 : 선상낚시(선박수 39척)
 - 포획·채취·반출 사유 : 여수 낚시어선 어업인의 생계유지 및 소득 증대

※ 주요 수산물 및 채취 내역

구분	종류별	채취시기	방법	연간채취량(kg)	단가(원/kg)	금액(백만원)
어류	참돔	5월~10월	선상낚시	9,000	13,000	117
	농어	5월~10월	선상낚시	7,000	11,000	77
	볼락	10월~다음해 6월	선상낚시	10,000	10,000	100
	열기	10월~다음해 6월	선상낚시	10,000	10,000	100
	우럭	10월~다음해 6월	선상낚시	7,000	12,000	84
	기타(부시리, 방어)	5월~10월	선상낚시	3,000	10,000	30
합계				46,000		508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11.3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여수 상백도·하백도 내에서 어류를 포획·반출하고자 동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2.4.)

- 백도는 지질, 지형, 생물자원 및 경관가치가 매우 우수한 곳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명승임. 현재 백도에는 무단입도, 낚시, 식물채취, 암석의 훼손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무단입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발생한 사례가 있음.
- ***가 요구하는 대로 백도 해역부에서의 배낚시 등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는 불법적인 갯바위낚시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며, 이것은 백도의 청정환경을 급격히 훼손하게 될 것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이 200m 이내 해역에서 수산물 채취를 제한적,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현재까지의 보존관리방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의견 / 2015.12.17)

- ***의 포획·채취 허가신청 건을 허가할 시 다른 어업관련 단체들의 신청이 잇따라 어업질서의 문란이 예상됨.

바. 의결사항 : 부결

11.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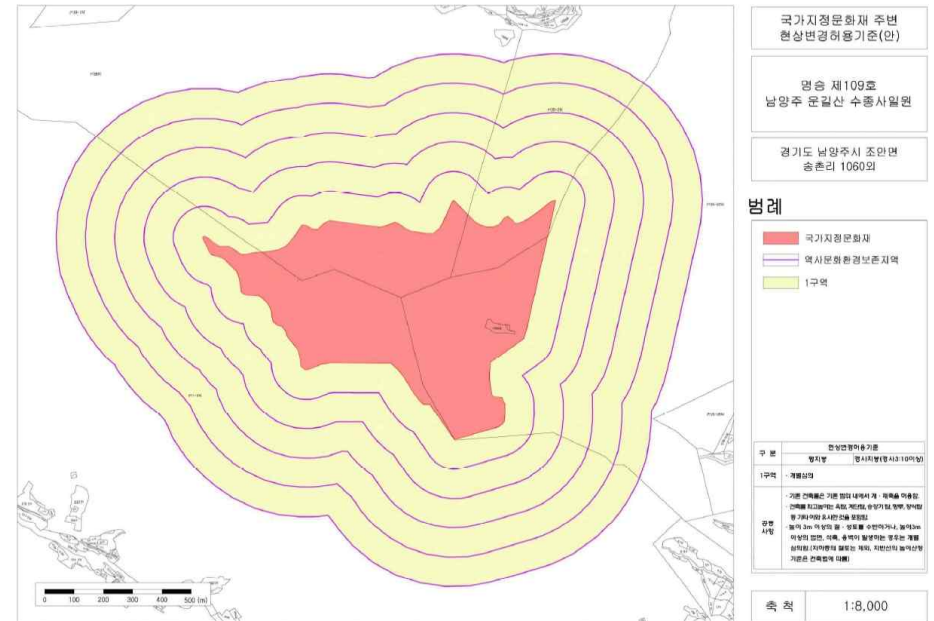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109호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시우리·진중리 일원
 - 지정일 : 2014.03.12.
- (3) 신청내용(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합(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라. 검토의견 (*****)

- 관리단체인 ***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청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으로, 해당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며, 구역 전체가 1구역(개별 심의)이므로 공통사항의 ‘절·성토 등 발생 시 개별심의’항목은 불필요한 사항임

[붙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도면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검토사항】

안전번호 천기 2016-02-12

12.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 결과 관련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내 제주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사업 관련 연산호 생태 검증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내 제주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사업 관련 연산호 생태 검증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현상변경 내용

- 사업명 :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
- 사업내용 : 제주 해군기지 건설
 - 건설규모 : 육상부 48만㎡, 해역부 92만㎡
 - 계류부두 2,235m, 외곽시설 2,500m
 - 건물 : 작전/지휘시설, 행정사무실, 의료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 사업기간 : 2009.9.28. ~ 2016.2.29.

(2) 검증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 개요

- 조사기관 : *** 산학협력단(***교수) *해군본부 발주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4.11월~2015년 11월 (조사기간 : 2014.12월~2015.7월)
- 조사지역 : 문섬(3), 범섬(4), 기차바위(3), 강정등대(1), 서건도(1)
- 조사대상 : 산호충류, 무척추동물, 해조류
- 조사 및 분석 방법
 - 2009년 조사 장소와 동일한 지점의 상층(10m), 중층(20m), 하층(30m)에 5개의 방형구(0.5×0.5m)를 무작위로 놓아 수중영상 촬영 후 방형구내 출현 종수 및 평균 피도 산출(%)
- * 수심의 제한이 발생하는 지점(기차바위, 강정등대, 서건도)은 상층(10m), 하층(20m)으로 조사
- 분석은 Beyond BACI (Before-After/Control-Impact) 방법으로 주요종

(산호충류 8종, 무척추동물 4종, 해조류 5종)을 선정하여 각 종의 개체군 변동 분석

(3) 모니터링 결과

- 제주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 현장 인근해역인 문섬 등 5개 지역에 대하여 연산호 출현종수 및 평균 피도 조사결과

구분	문섬		기차바위		범섬		강정등대		서건도	
	'09년	'15년	'09년	'15년	'09년	'15년	'09년	'15년	'09년	'15년
출현종수	25	36	21	26	26	38	16	10	-	11
평균피도	15.4%	26.9%	29.1%	50.2%	23.9%	22.1%	29.1%	21.7%	-	27.2%

- 문화재구역(연산호 군락)의 핵심지역인 **문섬, 범섬, 기차바위** 조사결과 출현종수 및 평균피도는 **양호한 상태**임
- 다만, **강정등대**는 육지부와 약 400m 인접한 문화재구역 경계지점으로 **출현종수와 평균피도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

(4) 검토사항

- 공사전과 비교하여 연산호 출현종수와 평균피도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된 **강정등대 지역의 생태복원 방법**

- 인위적 복원 방법인 **자연착생 유도 구조물 제작 설치**(방파제용 TTP 이용 제안)
- **자연자재 복원력**으로도 강정등대 연산호군락은 서서히 회복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위적 복원보다 3~5배 소요기간 예상**

- 문화재청의 제주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 허가조건인 **사후조사 모니터링 (2016~2018년/3년간) 조사방법**
 - 건설공사 완료후에 해양물리학적 요인 보다는 해양저서생물 특히 연산호 군락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보존이 핵심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BACI 분석방법을 적용 사후조사 실시

라. 의결사항 : 보류

【보고사항】

안전번호 천기 2016-02-13

13. 천연기념물 식물 희귀식물 실태조사 및 연구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6년 연구과제로 수행하는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실태조사 및 보존관리 방안 연구」 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국립문화재연구소(자연문화재연구실)에서 천연기념물 희귀식물의 문화재적 가치 도출 및 대상지별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수행하는 「2016년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실태조사 및 보존관리 방안 연구」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 보고인 : 국립문화재연구소
-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47호 “괴산 추점리의 미선나무” 등 19개소
- 연구기간 : 2016년 2월~12월
- 연구내용
 -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관련 문헌 수집 및 분석
 - 희귀식물 19개소 실태조사
 - 19개소 지형, 기상, 토양환경 등 입지환경 조사
 - 출현식물종, 피도·우점도 등 식물상 조사
 - 조사구 내 수목의 흉고직경, 수고, 피도 측정 등 식생조사
 - 토양 및 가지, 잎, 출현 초본식물 등 표본 채취·조사
 - * 표본 채취는 조사용으로 최소한의 소량만 채취, 조사 예정
 - 대상지별 관리(이용) 및 생육현황 조사, 비교·분석 및 인지도 조사
 - 희귀식물 유형의 보존관리 정책 제안 및 대상지별 보존관리 방안 연구

라. 의결사항 : 접수

안전번호 천기 2016-02-14

14.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23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토지 형질변경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 (문화재 구역 내) - 사업내용 :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 (형질변경) 답→전, (성토) 3,318㎡, 높이 0.5m, (배수로) 0.5×0.5m ○ 허가조건 : 기 제출된 계획서대로 시행하되, 강우시 서낙동강으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겨울 철새 도래시기(11월~3월)을 피하여 공사를 실시할 것 ○ 허가기간 : 2016.2.1.~2016.12.31.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 *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380m 이격, 허용기준 4구역(32m이하) - 사업내용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절단시설 1기 설치(30HP, 84톤/일) · 유수 분리시설 설치 ○ 허가기간 : 2016.2.11.~2016.3.31.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바닥식 마을어업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일원 (문화재 구역 내) - 사업내용 : 바닥식 마을어업 · 면적 20ha, 가무락 채취, 바닥식(살포식) ○ 허가기간 : 2016.2.1.~2026.1.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산양 사육 ○ 신청목적 : 부상개체 치료 회복 및 산양 복원사업 활용 ○ 수량 : 1개체 ○ 허가기간 : 2015.10.30~2020.08.31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원앙 폐사체 소각 ○ 신청목적 : 폐사(노령사)에 따른 소각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 신청인 : *** ○ 허가사항 : 독수리 폐사체 매장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매장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6 참매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잿빛개구리매 폐사체 매장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매장 ○ 수량 : 1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수리부엉이 폐사체 매장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매장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4호 새매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새매 폐사체 박제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활용 ○ 수량 : 1개체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활용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7호 큰소쩍새	○ 신청인 : *** ○ 허가사항 : 독수리 폐사체 박제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활용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1호 올빼미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올빼미 포획 및 위치추적기 부착 후 방사 ○ 신청목적 : 올빼미 생태조사 연구 ○ 수량 : 5개체 ○ 포획방법 : 먹이로 유인, Bow net으로 포획 ○ 포획지역 : 총 3개지역 - 전북 정읍시 내장동 일원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 - 전북 임실군 덕치면 일원 ○ 허가기간 : 2016.02.02~07.31.까지 ○ 허가조건 - 제출된 연구계획서대로 시행하되 연구가 완료되면 포획장소, 위치추적장치 부착 현황 등 모든 기록이 명시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우리청에 제출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45호 하동 송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하동 송림 내 소나무 보호사업 - 사업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문화재 구역 내) - 사업내용 · 외과수술 28개소(공동충전은 28개소 중 16개소 만 시행) * 16개소는 허가조건 참조 · 지지대교체(I형,목제,1개소) : 573번 소나무(H=5m, Ø150mm) · 지지대 신규 설치(I형,목제,4개소) : 42번 소나무(H=7m, Ø150mm), 512번 소나무(H=6m, Ø200mm), 685번 소나무(H=8m, Ø150mm), 757번 소나무(H=6m, Ø200mm)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개선헌제(부엽토, 300포 살포) ○ 허가기간 : 2016.2.16.~2016.11.30.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과수술 28개소 중 16개소(2번,47번,60번,69번,125번,152번,163번, 188번,319번,340번, 350번,362번,395번,480번,570번,662번 소나무) 만 공동충전 시행 - 지지대 콘크리트 기초를 원형 화강석 기초로 변경하여 시행하되 방부목 밑둥이 들어가도록 흙을 파고 물빠짐 공을 설치한다. 	
	천연기념물 제468호 포항 북송리 북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포항 북송리 북천수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 *** *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40m 이격(허용기준 2·3구역 해당) - 사업내용 : 단독주택 1동, 지상1층(5.4m), 경사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448㎡, 건축면적 97.74㎡, 연면적 92.04㎡ ○ 허가기간 : 2016.2.4.~2016.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북면 농어촌도로 103호(백담선) 유지보수 - 사업위치 :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 산12-29(도로) 62-2(임야)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콘크리트 포장 교체 : B=3.0~5.0m, L=60m (1공구:10m, 2공구:13m, 3공구:15m, 4공구: 22m) · 가드레일 교체 : L=80m (1공구:12m, 2공구:24m, 3공구:16m, 4공구: 28m) · 석축(찰쌓기) 신설 : H=1~3m, L=60m (1공구:10m, 2공구:13m, 3공구:15m, 4공구: 22m) ○ 허가기간 : 2016.2.15.~2016.9.30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435호 달성 비슬산 암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비슬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물 설치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리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팔각정 2개소, 정자 2개소, 등 의자 20개 ○ 허가기간 : 2016.2.16~2016.8.31 ○ 허가조건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 과정에 조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할 것. 	<조건부 허가>
	명승 제61호 속리산 범주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 사업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통신 강관주 1본 설치(H=19.5m) ○ 허가기간 : 2016.2.1 ~ 2016.6.30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역에 전주가 추가로 설치되면 명승 경관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근 태평휴게소에 설치된 기지국과 커버리지가 중첩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타 통신사에서 급변 허가 받은 강관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것 	<조건부 허가>
	명승 제61호 속리산 범주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속리산국립공원내 이동통신공용화기기지국 설치공사 - 사업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 (문화재구역 내)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천골 휴게소 인근 IP주/산림형 1본 설치(H=6m) · 용바위골 휴게소 인근 IP주/산림형 1본 설치(H=18m) ○ 허가기간 : 2016.2.1 ~ 2016.7.31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역에 전주가 추가로 설치되면 명승 경관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타 통신사에서 금번 허가 받은 통신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것 							
허가 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제주 해군기지 건설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문화재 구역 내·외) - 변경 허가사항 : 허가기간 연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당초</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허가기간</td> <td>2009.9.28.~2016.1.31.</td> <td>2009.9.28.~2016.2.29.</td> </tr> </tbody> </table>	구분	당초	변경	허가기간	2009.9.28.~2016.1.31.	2009.9.28.~2016.2.29.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당초	변경						
허가기간	2009.9.28.~2016.1.31.	2009.9.28.~2016.2.29.							
허가 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강변대로 확장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 (문화재 구역 내·외) - 변경 허가사항 : 허가기간 연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당초</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허가기간</td> <td>2009.2.26.~2016.12.31.</td> <td>2009.2.26.~2017.12.31.</td> </tr> </tbody> </table>	구분	당초	변경	허가기간	2009.2.26.~2016.12.31.	2009.2.26.~2017.12.31.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당초	변경						
허가기간	2009.2.26.~2016.12.31.	2009.2.26.~2017.12.31.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원앙 폐사체 매장 ○ 신청목적 : 폐사(노령사)에 따른 매장 ○ 변경허가 사유 : 당초 소각 신청하였으나 적당한 소각시설이 없어 매장으로 변경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허가 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384 제주 당처물동굴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행원지구(월정지역) 배수개선 사업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0m 이격/허용기준3구역 - 변경허가사항 : 사업내용 변경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당초 허가사항</th> <th>변경 허가사항</th> </tr> </thead> <tbody> <tr> <td>배수로</td> <td>· L=1,310m</td> <td>· L=1,310m</td> </tr> <tr> <td>저류지</td> <td>· 1개소</td> <td>· 2개소</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기간 : 2010.02.06 ~ 2016.12.30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지역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주변에 위치한 지역임으로 굴착공사 동안 공사진행 상황에 대한 일일작업대장(굴착위치, 면적, 깊이 기타 특이사항)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고,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할 것. 	구분	당초 허가사항	변경 허가사항	배수로	· L=1,310m	· L=1,310m	저류지	· 1개소	· 2개소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당초 허가사항	변경 허가사항									
배수로	· L=1,310m	· L=1,310m										
저류지	· 1개소	· 2개소										
	명승 제61호 속리산 범주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범주사 상환암 인법당 개축공사 - 사업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구조 : (당초) 한식흙기와 → (변경) 한식동기와 ○ 허가기간 : 2015.5.29 ~ 2017.1.31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와의 광택, 밝은 구리색, 재질감이 명승 경관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부분 부식시키는 방법 등을 고안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시공할 것 	<허가사항 변경 조건부 허가>									

나. 의결사항 : 원안접수